

「삿포로시 의료비상사태선언」에 따른 중점조치

~ 특조법에 기반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~

2021년 5월 8일

대상지역

삿포로 시내

기간

2021년 5월 9일 (일) ~ 5월 31일 (월)

실시 내용

「삿포로시 의료비상사태 선포」에 의거하여 사람간 접촉기회를 철저히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삿포로 시내에 있어서의 외출이나 이동을 삼가는 등, 코로나19 등 대책 특별 조치법 제31조의 6 및 동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도민 등에 대한 요청을 실시함과 함께 필요한 협력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다.

【도민 및 도내에 체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요청】(5월 9일 ~)

(외출할 때는)

◆ 불필요한 외출이나 시외로의 이동을 삼간다. (특조법 제24조 제9항)

※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간에의 통원, 식료품·의료품·생활필수품의 구입, 필요한 직장출근, 옥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, 생활이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주십시오. 더욱이,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더라도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해 주십시오.

◆ 불필요한 도도부현간 이동, 특히 긴급사태조치지역과의 왕래는 엄히 삼간다. (특조법 제24조 제9항)

(음식을 섭취할 때는)

◆ 오후 8시 이후, 음식점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는다. (특조법 제31조의 6 제2항)

◆ 감염방지 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 등이나 영업시간 단축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삼간다. (특조법 제24조 제9항)

◆ 길거리·공원 등에서의 집단 음주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간다. (특조법 제24조 제9항)

◆ 가능한 한 동거하고 있지 않는 분과의 음식섭취를 삼간다. (특조법 제24조 제9항)